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5. 6. 20.>

응급조치결과보고서

(00-0000-0000)

제 0000-00000 호 . . .

수 신: ◯◯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○○경찰서장)

제 목: **응급조치 결과 보고**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아동학대행위자	성 명			
	주민등록번호	- (세)		
	직 업		피해아동등과의 관계	
	주 거			
	다른 가정구성원	성명: 행위자와의 관계: 주거:		
피해아동등	성 명			
	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			
응급조치 일시 및 장소	일 시	년 월 일 시 분		
	장 소			
응급조치의 내용	[]	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		
	[]	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		
	[]	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		
	[]	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		
	[]	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		
응급조치자	성 명		소 속	
	전화번호		직 급	
피해사실의 요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		별지와 같음		

소속:

사법경찰관리(주무관) (서명 또는 인)